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 번 호	71
-------------	----

제출년월일 : 1996.11.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 위임된 사무와 상호연관성이 있는 일부사무를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등장에 새로이 위임하고,
- 나. 이미 보건소장, 또는 동장등에 위임된 사무중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위임내용을 세분화하며,
- 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등장등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수임사무의 일부를 등장등에게 재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있어 우리구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위임현황

구 분 수임기관	계	신규위임	업무환수	기위임내용 세분, 신설	삭제및삭제후 규칙에 위임	기 타 (기 존)
계	162	45	6	71	33	7
구의회 시무국장	2					2
보건소장	143	38	6	70	28	1
동 장	17	7		1	5	4

나. 위임유형별 내역

【 신규위임 : 44 건】

주관부서	사 무 명	수임기관	사 유
총무국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역할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조례 가~라" 호를 제외한 기타 사무 	동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통워임조례에 위임된 사무로 동조례폐지
재무국 (세무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사무 : 2건 	동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로 동조항 폐지
건설국 (공원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에 관한 사무 : 2건 	동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전결규정에 내부위임된 사무로 농지법 개정규정에 의거 신규위임
재무국 (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장,보건소장에 기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함으로써 대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도모
도시관리국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철거·밀실의 신고 사무 	동 장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 2건 ○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 4건 ○ 진단용방사선방사장치에 관한 사무 : 7건 ○ 대마관리에 관한 사무 10건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관리에 관한 사무 : 6건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 9건 	보건소장	

【 환 수 : 6 건】

주관부서	사 무 명	수임기관	사 유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판매업등록 및 허가 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다. 보고 및 검사 라. 개수명령 마. 관리권 변경명령 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보건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공포 시행과 동시 독물및독물에관한법률의 폐지 후, 구청 환경과로 업무이관 시행하고 있는 업무임.

【 위임내용 세분 신설(추가) : 71 건】

주관부서	사 무 명	수임기관	사 유
총무국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장업에 관한 사무 : 1건 ◦ 장부검사 또는 관계원에 대한 질문 	동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위임조례에 의거 동장, 보건소장에 기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위임내용이 포괄적·단편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세분, 추가하여 수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 : 13건 ◦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 10건 ◦ 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사무 : 5건 ◦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 8건 ◦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 6건 ◦ 안경입소에 관한 사무 : 5건 ◦ 약국에 관한 사무 : 16건 ◦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8건 	보건소장	

【 삭 제 : 3 건】

주관부서	사 무 명	수임기관	사 유
도시관리국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증축·개축·재축·내수선) 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20m² 미만의 주거용이며 단층인 기준 건물에 한함) ◦ 가설건축물 신고 ◦ 옹벽 및 담장신고(티안, 미관지구 내행위 제외) 	동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 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임

【 삭제후 규칙에 위임 : 30 건】

주관부서	사 무 명	수임기관	사 유
건설국 (건설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도로 접용하기 	동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앙
도시관리국 (도시 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표시(개시·시설)신고 	동 장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판매업 하기 ◦ 마약에 관한 사무 : 5건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관련 사무 : 3건 ◦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1종 진입병에 관한 사무 : 5건 ◦ 소독업에 관한 사무 : 4건 ◦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지도 감독 ◦ 의료기관의 조제실 세제 제조에 관한 사무 : 8건 	보건소장	<p>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서초구규칙으로 재위임되자 함.</p>
-----	--	------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주관과 의견수렴.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임의 기준등) 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하기·인가·등록등 민원에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 4 조(사전승인의 억제) 수임사무의 치분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일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5 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하기·인가·등록·면허 및 감사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 (3)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 표]

의 임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 가 법령	수임기관
총무국 (총무과)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구의회 대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보 임용해제 포함) 의원면직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7조·제30조의5·제60조·제63조 및 제65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2.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나. 신고사항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재교부 다. 폐업신고수리 라. 장부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 인장업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 동법시행령 제4조 ○ 동법 제7조	동장
	3.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掌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동장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국 (총무과)	<p>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p> <p>가. 동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 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p> <p>나. 동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신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p> <p>다. 동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p> <p>라.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45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동장
재무국 (세무 관리과)	<p>1.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p> <p>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p> <p>나.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2조·제23조 	동장
재무국 (지적과)	1. 개별공시자가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동장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민국 (사회복지과)	1. 시체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	◦ 매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1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동장
도시관리국 (건축과)	1. 건축물 칠거·멸실의 신고	◦ 건축법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장
건설국 (공원녹지과)	1. 농지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나. 자경증명의 발급	◦ 농지법시행령 제10조 ◦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동장
보건소	1. 전염병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擬似)환자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에 따른 환자명부 작성 비치 및 보고 나.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 접종 다. 예방접종의 공고 라. 접종 유예 처리 마.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보관 사.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 접수 처리 아. 제3종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 전염병예방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동법 제11조 및 제12조 ◦ 동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동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동법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동법 제24조제2항	보건소장

주관부서	사무명	관계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자. 제1종전염병 환자(患者)에 대한 방역조치 차. 제1종전염병 환자 격리 수용 의료기관 지정 카. 소독 조치 타. 소독업무의 대행조치 파. 예방접종 미보호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전염병예방법 제37조 ◦ 동법 제29조제1항 ◦ 동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동법 제40조의2 ◦ 동법 제21조제2항·제56조의2, 동법시행령 제21조	보건소장
	2.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나. 예방접종실시 현황보고 접수처리	◦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동법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보건소장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다. 의원 등의 휴업·폐업의 신고 라. 의원 등의 업무개시 명령 마. 의원 등의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등	◦ 의료법 제3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동법 제30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동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동법 제48조제2항 ◦ 동법 제49조	보건소장

주관부서	시 . 무 명	근 가 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바. 의원 등의 시설·장비 등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등	◦ 의료법 제50조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보건소장
	사. 의원 등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등	◦ 동법 제51조·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아. 의원 등의 과징금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등	◦ 의료법 제53조의2·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자. 의원 등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동법 제71조·제72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차. 의료지도원의 배치	◦ 동법 제49조·제54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내지 제52조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1조제1항 본문,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리	◦ 동법 제3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6조	
	다.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금지,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50조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그에 따른 청문 마. 과징금부과 및 청수, 그에 따른 청문 5. 접골사, 침·구시와 시술소(이하 "시술소" 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나. 시술소의 휴업·폐업신고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감사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그에 따른 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51조·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 동법 제53조의2·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제33조·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보건소장
			보건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 ◦ 동법 제33조·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간호조무사 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 ◦ 동법 제48조제2항 및 제60조 ◦ 동법 제49조 및 제60조 ◦ 동법 제50조·제60조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 ◦ 동법 제51조·제53조의3·제60조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 기 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사. 시술소의 과정금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아. 시술소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6.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의 개설신고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다. 시술소의 휴업·폐업 신고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과 업무 검사 등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사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의료법제32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바. 시술소의 의료업정지·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53조의2·제60조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제31조 ◦ 동법제60조·제71조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0조제3항 및 제 61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동법 제30조제6항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2 ◦ 동법 제33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동법 제49조 및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50조·제61조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51조·제53조의3·제61조 및 제63조의 2, 동법시행령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주관부서	사무항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나. 휴업·폐업 및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보고와 감사등 라. 시장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그에 따른 청문 마. 과태료부과 및 청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8조 ◦ 동법 제15조 ◦ 동법 제23조·제24조·제2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9조	보건소장
	8. 차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인정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보건소장
	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인정사항 변경신고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다. 양수신고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라. 업무사항 조사·업무정지 또는 인정취소	◦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및 제4항,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4조	
	9.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신고	◦ 약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동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보건소장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다. 약국관리자 승인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신고 마. 보고와 감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 카. 약사 감시원의 배치 타. 면허증등의 갱신 및 재교부 파. 과징금의 부과및징수, 그에 따른 청문 하. 과태료의 부과및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거. 약국관리자 폐지 10.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나. 보고와 감사 등 다. 업무개시 명령등 라. 폐기명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동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 규칙 제15조 내지 제19조 ◦ 동법 제64조 ◦ 동법 제64조의2 ◦ 동법 제65조 ◦ 동법 제67조 ◦ 동법 제68조 ◦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89조및제90조 ◦ 동법 제70조 ◦ 동법 제71조의2, 동법시행규 칙 제93조 ◦ 동법 제71조의3 및 제69조의2,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 행규칙 제90조 및 제91조 ◦ 동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 31조, 동법시행규칙 제91조 ◦ 동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 	보건소장 보건소장

주관부서	사 무 일	근 거 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마. 개수명령 비. 등록증의 제교부 사.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 아. 과태료부과 및 청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에 관한 다음사무 가. 설치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수리 및 신고 필증 교부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 사항 신고 처리 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 리대장 작성·이자 및 관리 마.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지도·감독 바. 과태료부과 및 청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67조 ◦ 동법시행규칙 제93조 ◦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 동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 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 한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 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 한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 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 한규칙 제3조제3항 ◦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 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 한규칙 제3조제4항 ◦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 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 한규칙 제16조제1항 ◦ 의료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 규칙제60조 	보건소장 보건소장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p>사.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청문</p> <p>12.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대마취급자의 허가, 허가 사항 변경하기</p> <p>나. 허가증 교부, 재교부</p> <p>다. 대마연구자의 보고 수리</p> <p>라. 사고보고</p> <p>마. 폐지신고</p> <p>바. 대마취급사의 상설지등의 대마처리 등</p> <p>사. 검사와 수거</p> <p>아. 허가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p> <p>자. 물수대마의 처분</p> <p>차. 대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의 운반, 보관등 신고</p> <p>13.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 관 리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자 보호·관리 대 책 수립 및 홍보</p> <p>나. 검진</p> <p>다. 역학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2조의2·제50조 및 제63조의2, 동법시행령제31조 ◦ 대마관리법 제5조 ◦ 동법 제6조 ◦ 동법 제8조 ◦ 동법 제10조 ◦ 동법 제11조 ◦ 동법 제12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 동법시행령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2조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

주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p>라. 증명서 발급</p> <p>마. 무양가족의 보호 조치</p> <p>바. 감염자 명부의 작성·보고</p> <p>1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시행</p> <p>나. 금연 및 철주운동등 교육·홍보</p> <p>다.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p> <p>라.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보건 교육 실시</p> <p>마. 국민영양 개선 방안 강구 및 시도</p> <p>바. 구강 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p> <p>사. 보고·검사</p> <p>아. 수수료 징수</p> <p>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진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동법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 ◦ 동법 제8조 ◦ 동법 제10조 ◦ 동법 제12조 ◦ 동법 제15조 ◦ 동법 제17조 및 제18조 ◦ 동법 제28조 ◦ 동법 제30조 ◦ 동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p>보건소장</p> <p>보건소장</p>